

의안번호	2115816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2. 7.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 등의 스포츠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시각장애인 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및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 수입 시 관세 면제(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 현행 시각장애인 등¹⁾을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제조되어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수입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 종류는 다음과 같음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표 1] 관세 면제 장애인용품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팔·몸통·다리 운동 장치,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 인공후두, 인공달팽이관장치, 인조인체부분, 보청기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등
나. 희귀병치료제 － 세레자임 등 고서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핸드벨 및 차임벨, 프뢰벨, 몬테소리교구 등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1)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의미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할 경우 관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의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가에 명시되어 있는 팔·몸통·다리 운동 장치 외에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는 품목의 종류 및 수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표 2] 관세 면제 장애인용품(1-가.)

- | |
|---|
| <p>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p> <p>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 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p> <p>－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u>팔·몸통·다리 운동 장치</u>,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p> |
|---|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될 품목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수입물품 분류는 HS코드로 구분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등의 스포츠 용품이 해당하는 HS코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수입 품목의 종류 및 면세대상 포함 여부, 수입 실적 등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고은비
연락처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
